

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0나642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0나64292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8가단533954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지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지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, 임형모

변론종결 2021. 6. 23.

판결선고 2021. 10. 2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. 8. 18. 선고 2018가단533954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68,896,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B은 원고에게 68,896,5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나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50,325,6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50,325,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 중 「1. 피고 B에 대한 청구」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,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“원고는,”을 “피고 C은”으로, 제8쪽 아래서부터 2행, 제9쪽 1행,

2행, 4행의 각 “이 사건 아파트”를 “이 사건 각 부동산”으로,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“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인 1억 원과”를 “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잔액 68,896,557원과”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B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였고1), 피고 B은 2018. 8. 24. 원고에게 1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·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,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로 32,956,55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액 68,896,557원(=1억 원 - 32,956,553원)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. 11. 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감축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, 판사 박정운

별지

1)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,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실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.